

지급명령신청서

채권자 한가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00, 000동 000호

채무자 윤새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, 000동 000호

청구 취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4,60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9,6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2,000원)

청 구 원 인

1. 공동매장 운영과 종료

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. 4. 3.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공동매장을 운영하였고, 채권자가 보증금과 집기비 등 공동비용 일부를 먼저 지급하였습니다. 양측은 2026. 6. 30. 공동매장 운영을 끝내면서 보증금 반환분, 공동비용 및 매출 내역을 정산하였습니다.

2. 정산합의의 성립

양측은 2026. 6. 30. 최종 정산표를 확인한 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산합의금 금 5,400,000원을 2026. 7. 31.까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하였습니다. 정산합의서에는 당사자, 확정금액, 지급기한과 양측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3. 일부 지급과 잔액 미지급

채무자는 지급기 전인 2026. 7. 15. 위 약정금 원금 중 금 800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 따라서 남은 약정금 원금은 금 4,600,000원입니다. 채권자는 2026. 8. 5. 잔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공동매장 운영 합의서 및 종료 확인자료 1통
2. 최종 정산표, 공동비용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 1통
3. 2026년 6월 30일 정산합의서 1통
4. 약정금 일부 지급 거래내역 1통
5. 약정금 지급 요청 메시지 1통

2026. 8. 22.

채권자 한가람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